

## ●군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5-2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출입통제 등) 및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출입통제장소 지정)에 따라 군산항 남방과제 출입통제장소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이O열(49년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 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처분원인: '25.6.7.(토) 21:50경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과제 A구역 출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100,000원

라. 공고기간: '25. 8. 19. ~ 9. 2.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539-2248)로 연락하여 본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539-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